

보라마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

IRB No.	20190102/30-2018-102/013							
	☑ 기관심의							
제출 경로	□ 지정심의 (연구협약기관:)							
	□ 공동심의 (연=	구실시기관 :□ 서울대병원 □ ;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선정기관:)				
과제명	[국문] 유방 파라: [영문] Breast pal	고니미아시스 (1예) (증례보고) ragonimiasis (1 case) (Case rep	ort)					
	Protocol No.	1.0	Version No.	1.0				
αэн		성명	소속과	직위				
연구자	책임연구자	황기태	외과	임상교수				
₹ N 0	1 ¬ тı	오문영	외과	전공의				
참여연	1구신 	김종진	외과	진료교수요원				
생명윤리법에 따른 분류	☑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연구 대상	□ 임산부 [□ 손상된 동의 □ 연구 기관, □ 집단 시설에 (※ 약사법/ 규칙] (배상자 범주 《HRPP SOP에 따라 만18세 미만) □ 태아 □ 신생아 나능력을 가진 성인 책임 기관, 의뢰자 등의 피 고용인 Ⅱ 수용 중인 자(예: 시설에 수용된 ['의료기기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한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 전향적 인체유래물 수집 [□ 연구자의 연구원이나 학생 (수감자)등 (집단시설종류: (집단 시설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집단 시설을 말한다.)) 관한				



보라마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구 종류		□ 전향적 연구 (예시-Registry연구, 인체유래물저장소연구,전향적 코호트 연구등)								
	입상시험 ☑ 외연구	☑ 후향적 연구 (예시-증례보고, 후향적 코호트 연구 등)								
	7 - 1	□ 시판 후 조사(PMS)								
	□ 임상 시험		□의약품	□생물학	적제재 🔲	화장품	□ 건강기능	식품		
		연구 대상	□ 의료기기(분	분류번호(등	틀급):)	□JE	ł ()
			□ 의료기기보관소:(
			일반명		ć	상품명				
		Phase	□제1상 □	제1/2상	□ 제2상		제2/3상 🛘	제3상		제4상
			□생물학적동	등성	☐ Phase	e 분류없음	음 🔲 기타			
				□식약계	허 승인 대상	식약처하	H가일			
		식약처 승인 대상 여부		□ 승인지						
				*식약처 :	식약처 승인 정차 진행 중인 경우 추 후 식약처 승인서 제출 바랍니다.					
		임상시험 목적		□ 학술용	용 미국	내(KFDA)	허가용			
				□해외	허가용 (국가명)		
	☑ 단일 기관 (연구 [<u>-</u> 연구 [다국가 다기편	 반 연구				
연구 구분	1) 본 기관 책임연구자의 임상시험조정자(Coordinationg PI) 여부 ☑ 예 □ 아니오									
	2) 임상시험조정자(Coordinationg PI) 소속기관 보라매병원)									
	☑ 연구자(Inve	estigator	주도(IIT) 🔲	의뢰자(S	ponsor) 주도(S	SIT)				
	*연구자주도 임상시험(Investigator-Initiated Trials)									
연구 주도 형태	1) 연구자가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설계함.									
6 UI	2) 연구자가 임상시험의 자료, 기록, 이상반응 보고, 의약품 관리, 모니터링, 점검 등을 책임짐.									
	(이상반응 보고, 의약품 관리, 모니터링, 점검 등의 실무는 위착할 수 있음)									
연구계획서	2019-01-14				정기보고	スコ	1년			
최초승인일	2013 01 14				0111	<u>- イ</u> カ				
승인유효만료일	2020-01-13				연구의 위	리험도	최소위험 (N	Minimal risk)		
심의종류	신속심의 심의대상 연구계획서.PMS포함(신규)									
접수일자	2018-12-31			심의일	!자	2019-01-11				
심의결과				심의의결고	 ·통보일	2019-01-14				
		<u> </u>	—							
┃연구대상자에게 최소 ┃연구대상자 동의 면제			·도 신속심의 대	상이며,						
IRR승인 기준에 부합			제 승인합니다							

-검토자료

- 1. cerificate 서울대병원 인재원 GCP.pdf (88.90KB) 2. 20181229_BRM_연구계획서_paragonimiasis_kiterius.docx (140.40KB) 3. 연구계획심의의뢰서.pdf (284.39KB)



보라매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의 학 연 구 윤 리 심 의 위 원



서 울 특 별 시 보 라 매 병 원 장

본통보서에기재된사항은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기록된내용과일치함을증명합니다. 본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KGCP및ICH-GCP를준수하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등관련법규를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보라매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승인된 모든 연구의 연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연구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의 승인 이전에 연구대상자의 해당 임상연구의 참여가 금지됩니다.
- 2. 승인 받은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변경계획서에 대한 승인 이전에 원 임상연구 계획서와 다른 임상연구의 실시는 금지됩니다.
- 3. IRB 승인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4. 연구대상자에게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과정을 수행할 것이며,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참여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어떠한 변경이든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상황에서의 변경도 즉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6.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한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여 원 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증가 시키거나 연구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 예상하 지 못한 중대한 이상약물/의료기기 반응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이나 임상연구의 실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 7.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대상자 모집 광고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 8. 위원회의 승인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연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차지속보고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요구한 중간보고주기에 따라 연구 진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심의결과가 승인이 아닌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10.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심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한번의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 11. 연구종료 시에는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1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의료기기법, 헬싱키 선언 및 ICH-GCP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관련 법 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13. 헬싱키선언에 따라 모든 임상시험은 첫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전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primary registry)에 연구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http://register.clinicaltrials.gov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IRB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14. 승인 받은 연구에 대하여 기관의 내부 점검 및 외부의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내부 점검자, 외부의 모니터요원 및 점검자, 규제기관의 실태조사자 등이 연구 관련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 는 경우 연구담당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의 학 연 구 윤 리 심 의 위 원 회 위원장

본통보서에기재된사항은IRB의 기록된내용과일치함을증명합니다. 본기관 IRB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 법 및 ICH-GCP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SMG-SNUBMC	
	•
THE FOLLOWING WERE APPORVED: BOARD ACTION DATED: January.14	, 2019
STUDY NO : -	
IRB NO: 20190102 / 30-2018-102 / 013	
ADDDOVAL INCLUDES	
APPROVAL INCLUDES:	
1. Application for initial review	
2. Protocol	
3. Statement of the reason for waiver of informed consent	
4. Case report form	
5. The latest CV of principal investigator and etc.	
ALL CONDITIONS OF ADDROLLAR DEPUTATION OF A DISTRIBUTION OF DAY OF A DEPUTATION OF A DISTRIBUTION OF A	ID D
ALL CONDITIONS OF APPROVAL PREVIOUSLY ESTABLISHED BY SMG-SNU BMC FOR THIS RESEARCH PROJECT CONTINUE TO APPLY.	IKB
CONTINUING REVIEW REPORT INTERVAL: 12M	
IF YOU HAVE ANY QUESTIONS, CONTACT SMG-SNU BMC IRB (Tel: 82-2-870-1851)	
in Too initial initial gold flows, convince only since indicate the (16th of 2 2 0/0 1001)	
This is to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true and correct as reflected in the records of the SMG-SN	U
BMC Institutional Review Board. We certify that SMG-SNU BMC IRB is in full compliance with Good Clinic	al
Practice as defined under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regulations and the Internation	ı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ICH) guidelines.	
H H H	
의등병원	

Date

Chairperson

All investigators performing SMG-SNU BMC IRB approved projects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s:

- 1. Enrollment of participated subjects before the IRB approval of protocol/protocol amendment is forbidden.
- 2. To conduct the study according to the approved protocol. To conduct the study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protocol is forbidden.
- 3. To use the approved Informed Consent Form.
- 4.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shall be conducted based on sufficient explanation under no coercion or unfair influence, and a potential subject shall be provided with sufficient opportunity to consider the study participation.
- 5. Except for the unavoidable cases to protect subjects during the study conduct, any amendment of the study shall be implemented after getting the prior approval of the Board, and any amendment taken in an emergency situation for protection of subjects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Board.
- 6. In case the study should be conduct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protocol since the immediate risk factor occurring to subjects should be eliminated, the amendment item that may increase risk factors occurring to subjects or have serious effects of the study conduct, items on the unexpected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 or items on new information that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subjects' safety or study conduct shall be promptly reported to the Board.
- 7. The subject recruitment advertisement approved by the Board shall be used.
- 8. The Board approval period may not exceed one year. In case of intending to continue the study for more than one year, you are required to submit an annual continuation report, submit a report on the study progress in line with the interim reporting cycle as requested by the Board.
- 9. In case the IRB review decision is not an 'Approval', written response for IRB decision result shall be submitted within six months since the IRB review date.
- 10. In the case of a decision by the Board to disapprove, you may have the opportunity to submit an appeal in writing. However, you should not file an appeal 2 times in a row with the same reason.
- 11. When completing the research, Study completion report and Study result report shall be submitted.
- 12. You shall comply with Bioethics and Safety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Medical Device Affairs Act as defined under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regulation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ICH) guidelines and the Declaration of Helsinki.
- 13.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Helsinki, all clinical studies shall be disclosed in the database that allows public access(primary registry) prior to the first subject enrollment; for example, you may use http://register.clinicaltrials.gov. For details, please refer to the IRB website.
- 14. The internal audit or inspection from the regulatory agency for the approved study could be conducted. Investigator shall cooperate in helping this to carry out, when requested for reading of study document(including electronic document) by internal auditor or monitor from sponsor, or inspector from regulatory agency.

Korea FDA regulations require that the SNUBH IRB conduct review of approved research. You will receive Continuing Review Report forms from the SNUBH IRB. These reports must be returned even though your study may not have started.

Korea FDA regulations require that the SMG-SNU BMC IRB conduct review of approved research. You will receive Continuing Review Report forms from the SMG-SNU BMC IRB. These reports must be returned even though your study may not have started.

DISTRIBUTION OF COPIES:
SPONSOR:
CRO:
OTHER:
INSTITU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true and correct as reflected in the records of the SMG-SNU BMC Institutional Review Board. We certify that SMG-SNU BMC IRB is in full compliance with Good Clinical Practice as defined under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regu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ICH) guidelines.